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1. . .<br>(제 회) |      |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                       |
|-------|-----------------------|
| 제출자   | 국무위원 전해철<br>(행정안전부장관) |
| 제출연월일 | 2021. . .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정부의 데이터 분석·활용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6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지방의정연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혁신과 공공데이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및 디지털정부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 내실화 등을 위하여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려는 것임.

###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14.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1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중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  
의 행정문화 개선

1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18.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  
· 운영 및 지원

제12조제3항에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20.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

21.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2.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 개선
  23.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4. 민원행정 개선 과제 발굴 · 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 · 확산
  25.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 · 점검 및 평가
-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를 각각 제42호부터 제5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39호까지 및 제39호의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 · 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 · 보급에 관한 사항
  27.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8. 문서 · 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29.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 · 개선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3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32.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공데이터의 관리 · 공유 · 개방 · 이용 등에 관한 제도 · 정책의 연구 · 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 · 집행 · 총괄 · 조정
  3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에 관한 사항
  3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6.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 · 정책의 총괄 · 조정 및 지원
  3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
  38. 공공데이터 구축 · 품질관리 · 표준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
  39. 국가기준데이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9의2.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2조제3항제40호부터 제41호까지 및 제41호의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 ·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4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
  - 41의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3항제8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3호부터 제6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9.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 · 지원
  10.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15.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9.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2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2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24.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28.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3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1. 국민비서형(알림, 상담, 고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3.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3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35.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36.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조성
37.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8.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3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4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4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4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44.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46.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47.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4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5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5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53.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4.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55.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56.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5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6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6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62.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스 및 공통 인프라의 구축·운영
- 제33조제1항 중 “기록관리지원부 및 기록보존서비스부”를 “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로 한다.
- 제34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23.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2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제35조의 제목 “(기록관리지원부)”를 “(기록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관리지원부”를 “기록관리부”로 한다.
- 제3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8. 기록물의 인수·정리·등록에 관한 계획의 수립·총괄 및 시행
- 제36조의 제목 “(기록보존서비스부)”를 “(기록서비스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보존서비스부”를 “기록서비스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36조제2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제61조제2항 후단 중 “55명”을 “56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599”를 “1,611”로 하고, 일반직 계 “1,570”을 “1,58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00”을 “1,513”으로, 전문경력관 “20”을 “19”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03”을 “1,308”로 하고, 일반직 계 “1,292”를 “1,2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7”을 “1,253”으로, 전문경력관 “26”을 “25”로 한다.

별표 4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로 하고, 같은 표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 | 0명 | 2023년 9월 30일까지 |
|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개 과 | 5명 | 2024년 6월 30일까지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br>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br>1. ~ 25. (생략)<br><u>&lt;신설&gt;</u><br><br><u>&lt;신설&gt;</u><br><br>26. ~ 39. (생략)                                                                        |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 ~ 25. (현행과 같음)<br><u>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br/>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br/>항</u><br><u>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br/>활성화에 관한 사항</u><br>26. ~ 39. (현행과 같음)             |
|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② (생략)<br>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br>1. ~ 12. (생략)<br>13. <u>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br/>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br/>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u><br>14. <u>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u><br><br>15. <u>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br/>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br/>선</u> |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1. ~ 12. (현행과 같음)<br>13. <u>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u><br><br>14. <u>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br/>운영·개선</u><br>15. <u>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br/>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br/>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u> |

|                                                  |                                                       |       |                                                                      |
|--------------------------------------------------|-------------------------------------------------------|-------|----------------------------------------------------------------------|
| 16.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u>    | 16. <u>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u>          | <신 설> | 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 17.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u> | 17. <u>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u>                            | <신 설> | 27. <u>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u>                                   |
| 18. <u>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u>           | 18. <u>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u> | <신 설> | 28. <u>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u>                |
| <신 설>                                            | 19. <u>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회·홍보 및 제도화 연구</u>                | <신 설> | 29. <u>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u>                              |
| <신 설>                                            | 20. <u>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의 발굴·관리</u>              | <신 설> | 30.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u>                        |
| <신 설>                                            | 21. <u>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u>            | <신 설> | 31.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u>                     |
| <신 설>                                            | 22. <u>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u>                | <신 설> | 32. <u>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u>                              |
| <신 설>                                            | 23. <u>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 <신 설> | 33. <u>공공데이터의 관리·공유·개방·이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u> |
| <신 설>                                            | 24. <u>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 <신 설> | 34. <u>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u>                    |
| <신 설>                                            | 25. <u>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u>               | <신 설> | 35. <u>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u>                                           |
| <신 설>                                            | 26. <u>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u>                              |       |                                                                      |

|                        |                                                   |
|------------------------|---------------------------------------------------|
|                        | <u>성화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u>36.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u>          |
| <u>&lt;신 설&gt;</u>     | <u>3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
| <u>&lt;신 설&gt;</u>     | <u>38. 공공데이터 구축·품질관리·표준화 및 데이터기반행정 표준화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u>39. 국가기준데이터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u>39의2.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및 결합 등 관리에 관한 사항</u>  |
| <u>&lt;신 설&gt;</u>     | <u>40.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u>    |
| <u>&lt;신 설&gt;</u>     | <u>4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u>                 |
| <u>&lt;신 설&gt;</u>     | <u>41의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공무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u>           |
| <u>26. ~ 42.(생 략)</u>  | <u>42. ~ 58. (현행 제26호부터 제42호까지와 같음)</u>           |
| 제13조(디지털정부국) ①·② (생 략) | 제13조(디지털정부국)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8.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 조성                            |
| 9.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9.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 10.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 10.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 11.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개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 11.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 12.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 13.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1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 14.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14.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 15.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15.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 16.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1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17.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                                                                |

|                                                       |                                            |                                                               |                                                  |
|-------------------------------------------------------|--------------------------------------------|---------------------------------------------------------------|--------------------------------------------------|
| 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17.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항                                                             | 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 18.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18.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2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29.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발굴에 관한 사항                  |
| 1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19.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 26.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30.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2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7.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1. 국민비서형(알림, 상담, 고지 등) 통합서비스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2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21.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 2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32.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도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 2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 2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 29.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 33. 전자증명서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에 관한 사항        |
| 2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2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 3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4.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 24.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4.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31.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5.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                                                       | 25.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32.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36.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
|                                                       | 26.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3.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 37.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 27.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제도 관리에 관한 사항               | 34.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38. 전자정부 관련 제품(「지능                               |
|                                                       | 28.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                         |                                                               |                                                  |

|                                                                                                                            |                                                                       |                                            |                                                       |
|----------------------------------------------------------------------------------------------------------------------------|-----------------------------------------------------------------------|--------------------------------------------|-------------------------------------------------------|
| 35.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 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4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수립 및 시행                                               |
| 36.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39.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4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8.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 37. 공공분야 디지털 고지·수납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46. 국가기준정보체계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9.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
| 38.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4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47.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50.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 3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4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48.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5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
| 40. 전자정부 관련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 49.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 5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 41. 전자정부 관련 국제평가지수 관리에 관한 사항                                                                                               | 44.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0.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3.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42.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데이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 4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5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54.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 43.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 46.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52.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55.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                                    |
|                                                                                                                            | 47.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 53.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                                                       |
|                                                                                                                            |                                                                       | 54.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                                                       |

|                                                                                                         |                                                   |                                                                   |                                                                  |
|---------------------------------------------------------------------------------------------------------|---------------------------------------------------|-------------------------------------------------------------------|------------------------------------------------------------------|
|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br>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63.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기<br>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 55. 「전자정부법」 제37조에<br>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br>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 56.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br>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br>한 사항      | 6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br>· 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br>사항                      | <삭 제>                                                            |
| 56.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br>터 활용 서비스 도입 활성화<br>에 관한 사항                                                        | 5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br>신분증 도입에 관한 사항               | 6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br>분야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br>사항                        | <삭 제>                                                            |
| 57. 공공데이터 관련 대용량의<br>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br>트(이하 이 조에서 “공공분야<br>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br>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br>· 시행 | 58.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br>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66.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br>운영·개선                                         | <삭 제>                                                            |
| 58.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br>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5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br>분야 업무환경의 개선에 관한<br>사항       | 67.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br>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삭 제>                                                            |
| 59.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br>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br>한 정책의 수립                                                       | 60.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br>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68.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br>마트워크(smart work)에 관<br>한 사항                 | <삭 제>                                                            |
| 60. 공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br>제 발굴 및 수행                                                                          | 6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br>마트워크(smart work)에 관<br>한 사항 | 69.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br>스 및 공통 인프라 구축·운<br>영                         | <삭 제>                                                            |
| 61.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br>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br>항                                                              | 62. 모바일 기반 전자정부서비<br>스 및 공통 인프라의 구축·<br>운영        | 제33조(하부조직) ① 기록원에 기<br>록정책부·기록관리지원부 및<br>기록보존서비스부를 둔다.<br>② (생 략) | 제33조(하부조직) ① -----<br>-----기록관리부 및<br>기록서비스부-----.<br>② (현행과 같음) |
| 62.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서<br>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                                                   | 제34조(기록정책부) ① (생 략)<br><br>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br>다.                 | 제34조(기록정책부) ① (현행과<br>같음)<br><br>② -----<br>--.                  |

|                    |                    |                      |                    |
|--------------------|--------------------|----------------------|--------------------|
| 1. ~ 15. (생략)      | 1. ~ 15. (현행과 같음)  |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 -----              |
|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  | <삭제>               |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     | -----              |
| 계획의 수립·운영          |                    | 원으로 보한다.             | -----.             |
| 17. 삭제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 ② -----            |
| 18. ~ 21. (생략)     | 18. ~ 21. (현행과 같음) | 다.                   | --.                |
|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22.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  | 1. 기록물의 인수·정리·등록     | <삭제>               |
| 개발 및 추진            | 태 점검 및 평가          | 에 관한 계획의 수립·총괄       |                    |
| <신설>               | 23.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 | 및 시행                 |                    |
|                    | 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2. ~ 20. (생략)        | 2. ~ 20. (현행과 같음)  |
| <신설>               | 24.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 2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    | 21.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  |
|                    | 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계획의 수립·운영          |
| 제35조(기록관리지원부) ① 기록 | 제3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 | <신설>                 | 22.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 관리지원부에 부장 1명을 두고,  | 부-----             |                      | 의 개발 및 추진          |
|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              |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
|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 -----              | 정원) ① (생략)           |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 보한다.               | ----.              |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     | ② -----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 ② -----            | 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      | -----              |
| 다.                 | --.                | 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 -----              |
| 1. ~ 7. (생략)       | 1. ~ 7. (현행과 같음)   | 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   | ---. -----         |
| 8.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  | 8. 기록물의 인수·정리·등록   | 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 -----              |
| 점검 및 평가            | 에 관한 계획의 수립·총괄     | 포함한다)은 55명을, 3급 또는 4 | ----- 56명-----     |
|                    | 및 시행               | 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 -----              |
| 9.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  | <삭제>               |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 -----              |
| 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 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 -----              |
| 제36조(기록보존서비스부) ① 기 | 제36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 |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   | -----              |
| 록보존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 비스부-----           | 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   | -----              |

|                                                           |                          |
|-----------------------------------------------------------|--------------------------|
| 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br>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br>를 그 상한으로 한다. | -----<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1,599</u> | <u>1,611</u> | +12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1,570</u> | <u>1,582</u> | +12 |
| ·           | ·            | ·            |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1,500</u> | <u>1,513</u> | +13 |
| ·           | ·            | ·            |     |
| 전문경력관       | <u>20</u>    | <u>19</u>    | -1  |
| ·           | ·            | ·            |     |
| ·           | ·            | ·            |     |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1,303</u> | <u>1,308</u> | +5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1,292</u> | <u>1,297</u> | +5  |
| ·           | ·            | ·            |     |
| ·           |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 <u>1,247</u> | <u>1,253</u> | +6  |
| 전문경력관       | <u>26</u>    | <u>25</u>    | -1  |
| ·           | ·            | ·            |     |
| ·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
| 연 락 처       | (044) 205 - 2313 |